

국외제조사에 의한 [] 선임서 [] 해임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
			7일
① 국외제조사	사업장명		제조(생산)국
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	
	주소 (전자우편 주소:)		
	(전화번호:)		
	(팩스번호:)		
② 선임(해임) 대상자	사업장명	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(이메일주소:)
	주소		
	(전화번호:)		
	(팩스번호:)		
③ 선임(해임) 분야	1. []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·제출(법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) 2. [] 화학물질의 명칭·함유량 또는 확인서류 제출(법 제110조제2항) 3. [] 대체자료 기재,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이의신청(법제112조제1항, 제5항, 제6항)		
④ 선임인 경우 선임 기간			
⑤ 해임인 경우 선임번호			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6조제2항에 따라 국외제조자는 위와 같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[] 선임 [] 해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국외제조사 : (서명 또는 인)

선임(해임) 대상자 : (서명 또는 인)

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 귀하

붙임 서류	1.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166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증명서류 1부 2.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(해임) 여부 증명서류 1부
-------	---

작성방법

- ①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조한 자로서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는 자를 선임하고자 하는 국외제조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.
- ②란은 국외제조자가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선임(해임)하고자 하는 선임(해임) 대상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.
- ③란에서 1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·제출)~2(화학물질의 명칭·함유량 또는 확인서류 제출)는 함께 선임해야 하며, 3(대체자료 기재, 유효기간 연장 승인 또는 이의신청)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1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·제출)~2(화학물질의 명칭·함유량 또는 확인서류 제출)는 함께 선임해야 합니다.
- ④란은 선임하는 경우(해임서인 경우는 제외) 선임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선임기간을 기재합니다.(선임계약서에 별도의 선임기간이 없는 경우 최대 5년을 경과할 수 없음)

처리절차

